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1.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성분을 지정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금기 성분을 추가·변경 지정하여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관련 협회에서는 회원사 등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고시는 우리처 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2.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 1부.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본부(55개 전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43개 전부서), 6개 지방청장, 관련 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보건복지위원장, 관련 협회 및 단체

사무관	박미자	의약품안전평가과 전결 2023. 7. 5. 가과장 직무대리	이인선
협조자			

시행 의약품안전평가과-4786 (2023. 7. 5.)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2703 팩스번호 043-719-2700 / agamist@korea.kr / 대국민 공개